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65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임미애 · 이병진 · 이연희
김원이 · 허 영 · 박해철
송옥주 · 윤준병 · 임호선
서미화 · 권향엽 · 위성곤
최민희 · 이재관 · 김 윤
민홍철 · 이광희 · 어기구
최혁진 · 정혜경 · 박지원
의원(21인)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

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여성 대의원은 100분의 30, 청년 대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

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 2)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 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카. 경비 지원(안 제6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회의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회의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가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농림어업·농

산어촌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한다.

③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림어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농어업회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② 농어업회의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③ 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초농어업회의소: 기초농어업회의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할 것. 다만,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지역은 제외한다)를 관할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과 “자치구”라는 문자를 붙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광역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인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할 것

3. 전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

제6조(업무) 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3.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4.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5.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7. 농어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관련 업무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대(附帶)되는 업무
- 제7조(정치적 중립) ① 농어업회의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농어업회의소는 공직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제2장 기초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제8조(관할구역)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1. 특별시
2. 광역시(제6호에 따라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3. 특별자치시
4. 시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
6. 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둘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다.

제9조(설립 인가 등)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여건 등에 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행정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립인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관할구역 및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8.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0. 회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설립등기 등)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③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한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대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절 회원

제13조(회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5.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6.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자치구만 있는 광역시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시·행정시 또는 군에 속하는 법인

7.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또는 군에 속하는 단체로서, 해당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단체

제14조(회원의 가입)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해당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자격을 가진 자의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제24조에 따라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②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 ①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제18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부의무와 그 밖에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회원 대장)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에게 회원 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기관

제20조(대의원총회)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총회는 일반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 대의원총회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④ 임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이 대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대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21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4.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제22조(대의원총회의 의사)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재적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대의원 재적정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대의원

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대의원의 정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일반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의 정원수를 각각 구분하여 정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대의원의 정원이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 읍·면·동별 회원 수를 고려하여 대의원의 정원을 정하되, 읍·면·동별로 대의원의 정원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여성인 대의원이 일반대의원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청년 대의원이 일반대의원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24조(대의원의 선거) ①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일반회원이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일반대의원 또는 특별대의원 각 재적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결원인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일반대의원 또는 특별대의원 각 재적정원 중 결원이 5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대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거와 보궐선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자격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의원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의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직된다.

제27조(대의원의 해임) ①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를 받아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대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특별회원·특별대의원의 대표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나 특별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 또는 일반대의원인 사람
3.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의 대표자인 사람

③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9조(임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일반대의원 중에서 선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 ②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대표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정관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監事)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32조(상임의원회)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 ②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

의 목적과 안건을 적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상임위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상임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변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제34조(사무국)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다.

제3장 광역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제35조(관할구역) 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1. 광역시(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로 한정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도
3. 특별자치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둘 이상의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6조(설립 인가 등) ①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전체 시·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여건 등에 관하여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립인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관, 설립등기 및 해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2절 회원

제38조(회원)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법인

3.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해당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단체

제3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광역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제43조에 따라 특별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0조(탈퇴) ① 회원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해산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제41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의 가입, 회원의 의무, 제명과 권리 제한 및 회원 대장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3절 기관

제42조(대의원총회)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총회는 일반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장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① 일반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의 경우: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부회장(1명으로 한정한다)

2.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우: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②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대의원의 보궐선거는 특별대의원 재적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결원인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대의원 재적정원 중 결원이 5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대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대의원의 선거와 보궐선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대의원의 자격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의원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의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직된다.

제45조(특별회원·특별대의원의 대표자)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
회원이나 특별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
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
표자를 선정하여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
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
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인 사람

3. 같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의 대표자인
사람

③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역농어업회의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임원)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일반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②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48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 대의원의 해임, 임원의 직무, 상임의원회, 상임의원회의의 의결사항 및 사무국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4장 전국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제49조(관할구역) 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 전국농어업회의소는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

제50조(설립 인가 등) 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 8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이하 “관할대상구역”이라 한다) 수의 5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대상구역 수의 3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관, 설립등기 등 및 해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2절 회원

제52조(회원)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거나 전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

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거나 전국을 그 업무구역으로 하는 법인

6.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 업무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거나 전국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단체

제53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전국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제56조에 따라 특별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4조(준용규정)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의 가입, 회원의 의무, 제명과 권리 제한 및 회원 대장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②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의 탈퇴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3절 기관

제55조(대의원총회)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총회는 일반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장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①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대의원의 보궐선거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대의원의 선거와 보궐선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대의원의 자격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의원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의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대의원은 면직된다.

제58조(특별회원·특별대의원의 대표자)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
회원이나 특별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
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
표자를 선정하여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
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
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57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인 사람
 3.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의 대표자인 사람
- ③ 특별회원 또는 특별대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농어업회의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9조(임원)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일반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0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②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61조(준용규정)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 대의원의 해임, 임원의 직무, 상임의원회, 상임의원회의의 의결사항 및 사무국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5장 보칙

제62조(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 그 농어업회의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농어업회의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원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의결을 위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 조치 대상 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개선 조치 대상 임원은 면직된다.

⑤ 농어업회의소는 제4항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신임 의결 대상 임원에게 재신임 의결의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4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업무를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 수행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행정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4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사용료)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회의소가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9조(「민법」의 준용) 농어업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준용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